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77

발의연월일: 2024. 6. 11...

발 의 자:한병도·위성락·위성곤

진선미 · 김한규 · 윤건영

윤준병ㆍ허 영ㆍ윤종군

정청래 · 김병기 · 신영대

송기헌 · 강경숙 · 황유하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(收受)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 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그런데, 최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수수했음에도, 직무관련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부정청탁 성립이 어렵고 그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지적됨.

이에,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 여부 등에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·약속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.

또한,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자등에 준하여 처벌함으로써 배우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방지하고,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8조 및 제22조). 법률 제 호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·후원·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

제2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제8조제6항을 위반한 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8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 ① ~	제8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 ① ~		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⑥ 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		
	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		
	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고		
	위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		
	<u>련 여부 및 기부·후원·증여</u>		
	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		
	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		
	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		
	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		
	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		
제22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	제22조(벌칙) ①		
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			
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			
하의 벌금에 처한다.		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6. 제8조제6항을 위반한 「고위		
	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		
	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		
	각 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		
	의 배우자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